1. 개정이유

의료법 제23조의2에 근거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현행 고시에서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구분하여 운영중이나,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의 중복, 의료기관의 참여율 저조 등 인증 구분에 따른 실효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고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현행 유지하고,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구분 폐지(현행 제9조 삭제, 안 제2조 및 제10조 개정)

1) '제품인증' 및 '사용인증'을 구분하는 용어, 인증 종류 및 인증신청에 관한 항목 삭제

2) '제품인증' 신청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항목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에 관한 항목으로 수정

나. 인증 변경심사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증기준 준수에 관한 점검을 위해 자체점검결과서 제출 요청 근거 신설(안 제15조 개정)

1) '인증기준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조항을 '인증기준에 관한 기능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 로 수정

2) 인증을 취득한 기관에게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준수에 관한 자체점검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기능변경(삭제) 신고서 또는 자체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 조항 신설

다.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변경심사 또는 현장점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수정(안 제17조 개정)

라. 별표 및 별지 내의 법령 조항 현행화

1) 별표 제1호·제2호, 별지 제1호·제3호·제5호·제6호서식 개정

2)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개정,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개정,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개정

3) 별지 제4호·제8호·제12호 삭제

4) 별지 제9호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및 별지서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00호

「의료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9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인증종류, 대상 및 인증기준”을 “인증 기준 및 절차”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유형에 따라「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9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분류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10조의9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의료기관의 장
2. 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발·제조·공급하는 자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0조의9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갱신) 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일부 인증기준 항목에 대한 심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4. 그 밖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다음의 “제4장 인증 절차 및 방법”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신청기관”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신청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한글인증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표자, 소재지”를 “대표자”로,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5장을 제4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에 관한 기능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기능 변경(삭제) 신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인증을 취득한 기관에게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준수에 관한 자체점검결과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자체점검결과서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인증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심사 방법 빛”을 “심사 방법 및”으로, “제4장”을 “제3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 및 점검 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14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장을 제5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및 제3호 중 ““제품인증” 심사”를 “인증심사”라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안모형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의 2. 중 “④ 자격증명서(해당 시)”를 “③ 자격증명서(해당 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품인증 또는 사용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이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품인증 또는 사용인증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품인증"이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발·제조 및 판매하는 기관(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자체 개발하여 운영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포함한다)의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5. "사용인증"이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기준과 관련된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6. ~ 8. (생 략)	4. ~ 6.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3조(인증기관)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관) ① 인증기관----------.
②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인증기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관련 업무	6. ---------- 인증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청문을 실시한 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이 제1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	3. ---------- 제11조제2항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인증종류, 대상 및 인증기준	제3장 인증 기준 및 절차
제9조(인증의 종류 및 인증대상) 인증의 종류는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구분하며,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1. "제품인증"의 대상은 제10조	

제1항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한다. 2. "사용인증"의 대상은 제10조 제1항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인증기준) <신 설>	제9조(인증기준)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유형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9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분류할 수 있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을 인증위원회의 심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인증위원회 ----------.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10조의9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발·제조·공급하는 자와 자체 개발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의료기관의 장

2.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 중인 의료기관의 장은 "사용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발·제조·공급하는 자
3. "사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단, 이 조건은 최초심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삭 제>
4. 제3호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한 기간은 의료기관에서 시험적으로 사용한 기간, 또는 타 제품과 병행하여 사용한 기간은 제외한다.	<삭 제>
② "제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의9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1.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갱신) 신청서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2.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명서	<삭 제>

및 성능진단 결과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가점검결과서로 대치 가능)	
4. 인증기준 면제를 신청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	3. 제9조제3항에 따라 일부 인증기준 항목에 대한 심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5. 그 밖에 인증심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	4. ---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③ "사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2. 동일 인증 제품 사용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4. 해당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제품인증서 사본 및 관련 증빙 서류	
5.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6. 그 밖에 인증심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신청기관의 위임을 받아 해당 "제품인증"을 받은 기관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3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⑥ (생 략)	③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신청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청 취소 요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장 인증 절차 및 방법	<삭 제>
제12조(인증심사 및 보완조치) ① 인증심사는 신청문서검토와 현장심사로 구분한다.	제11조(인증심사 및 보완조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현장심사는 신청문서 검토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현장 방문하여 심사하며 신청기관은 현장심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2. ----------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기관

수 있는 환경과 적절한 심사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사중단) ① (생 략)	제12조(심사중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사유로 심사 중단을 통보받은 신청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의 신청을 하여 심사중단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제18조----------.
제14조(심사결과)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종료 또는 신청기관의 보완조치 등의 완료를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결과) ① ---------- 2개월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신청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한글인증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인증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7호서식----------.
④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서 변경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대표자 ---------- 별지 제8호서식----------.
제5장 인증의 사후관리 등	제4장 인증의 사후관리 등
제17조(변경심사) ① 제품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기능의 삭제 등 인증기준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변경심사) ①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에 관한 기능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기능 변경(삭제) 신고서를 인증기관에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인증을 취득한 기관에게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준수에 관한

	자체점검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자체점검결과서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인증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는 제10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심사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 제9조---------- 제11조---------.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심사 결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다.	⑥ 제5항----------.
제18조(인증의 갱신 등) ① (생 략)	제16조(인증의 갱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갱신신청에 대한 심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 및 ---------- 제3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제17조(인증의 취소) ① ----------. ----------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인증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②·③ (생 략)	----------.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 및 점검 결과------ <삭 제>
제20조(이의신청) ① 신청기관은 인증심사, 심사중단 또는 인증취소와 관련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 30일 이내---------- 별지 제10호서식----------. ② ----------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인증업무 일반 등 <신 설>	<삭 제> 제5장 인증업무 일반 등
제21조 ~ 제23조 (생 략)	제19조 ~ 제21조 (현행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별표 1]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등급별 자격요건

인증심사원 등급별 자격요건(제7조 관련)

인증심사원은 해당 등급의 자격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의료정보관리인증 심사원보 자격 기준

등급	자격 기준
심사원보	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 2)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보건의료분야 근무경력 7년 이상이면서 의료정보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의료정보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③ 인증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보건의료 분야 또는 의료정보 관련 분야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자 3)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통과한 자

2. 의료정보관리인증 심사원 자격 기준

등급	자격 기준
심사원	1) 심사원보 자격을 기 확보한 자 2) 심사원 보수교육 과정을 통과한 자 3) "인증" 심사에 심사원보 이상의 자격으로 3회 이상 참여한 자. 이 때 3회 이상의 심사는 다음 각 호를 만족시켜야 한다. ① 현장심사일수 10일 이상 ② 현장심사 숏과정에 2회 이상 참여

3. 의료정보관리인증 선임심사원 자격 기준

등급	자격 기준
선임심사원	1) 심사원 자격을 기 확보한 자 2) 선임심사원 보수교육 과정을 통과한 자 3) "인증" 심사에 심사원의 자격으로 최소한 8회 이상 현장심사에 참여하여 심사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이 때, 8회 이상의 심사는 다음 각 호를 만족시켜야 한다. ① 현장심사일수 30일 이상 ② 현장심사 숏과정에 4회 이상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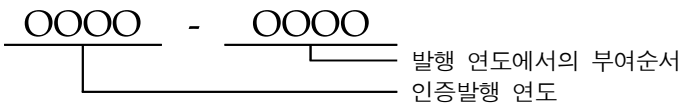
[별표 2] 인증의 표시

인증의 표시(제14조 관련)

1. 인증번호 부여

가. 인증번호는 유일성, 간결성,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심사, 갱신심사의 구분 없이 발급순서별로 부여한다.

나. 인증번호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부여한다.



2. 도안모형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3. 인증 표시에 대한 유의사항

가. 인증 취득 사실의 홍보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나. 인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유효기간, 인증유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의 사실을 과장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4. 인증 표시의 사용 방법

가. 인증 표시는 지정된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흑백으로 사용하거나 표시된 인쇄물의 주된 단일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증 표시의 크기는 표시물 대상의 크기나 표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일반문서, 편지의 상단, 송장, 홍보 책자 등에 인증 취득 사실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5. 인증명판 제작 시 유의사항

가. 소재는 가급적 동판으로 제작한다.

나. 바탕색은 가급적 연마하지 않은 황동색으로 한다.

다. 도안 모형은 인증의 표지를 중앙에 둔다.

라. 글씨 및 도형은 양각으로 한다.

마. 크기는 사각형으로 하며 가로와 세로 비율을 3 : 2로 하여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유형	[ ] 심사원보	[ ] 심사원	[ ] 선임심사원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 (3.5cm × 4.5cm)
	소 속				
	주 소	(우:)			
	휴대전화				
	이메일				
학력사항	최종학력	[ ] 4년 대졸 [ ] 석사 [ ] 박사			
경력사항 (※ 서류로 증명 가능한 내용만 기술)	경력 내역	1)			
		보건의료분야 근무 경력 기간	총 년 개월		
		(상기 경력 중) 의료정보 관련 경력	총 년 개월		
		기타	총 년 개월		
		2)			
		의료정보 관련 분야 근무 경력 기간	총 년 개월		
		기타	총 년 개월		
		총 합	총 년 개월		
	경력인정 자격	자격증 또는 학위명(전공 또는 논문명)	취득일자	수여기관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격 신청 세부내역서 2. 응시요건에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 ① 학력증명서 ② 부서이동 및 수행업무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상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③ 자격증명서(해당 시)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등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

1. 발급번호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유효기간 :
5. 등 급 :

위 사람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7조에 따른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갱신) 신청서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처리기간

인증 신청구분	신규 인증 □ 갱신 □			
신청인 (※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	기업명 또는 의료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번호		
	요양기관 번호			
주소 및 담당부서	주소			
	담당부서	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	팩스	이메일
		기관홈페이지주소		

인증받을 시스템 정보	시스템명		버전
	시스템명(영문)		
인증유형	유형 1 □ * 의원급	유형 2 □ * 병원급, 종합병원(300병상 미만)	유형 3 □ *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선택 인증기준	*추가 인증을 신청할 선택 인증기준을 기술하시오*		
현장심사 희망기간 (1주)	*0000년 00월 첫째주(00일~00일)*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9,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1부, 자가점검 결과서 1부, 인증기준 면제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등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처리기간

<table>
<tr><td>신청정보</td><td colspan="6">기업명 또는 의료기관명</td></tr>
<tr><td rowspan="8">전자의무기록
시스템
현황</td><td rowspan="2">운영방식</td><td>운영 구조</td><td>☐ On-Premise
(기관 내 구축형)</td><td>☐ ASP
(호스팅형)</td><td>☐ Cloud
(클라우드형)</td><td>☐ 기타 :</td></tr>
<tr><td>구현 방식</td><td>☐ WEB 기반</td><td>☐ Client/Server</td><td>☐ Hybrid</td><td>☐ Cloud</td></tr>
<tr><td>서버
OS 종류</td><td colspan="2"></td><td>DBMS 종류</td><td colspan="2"></td></tr>
<tr><td>업데이트
방법</td><td colspan="5">☐ 자동 설치 ☐ 원격 설치 ☐ 패키지 설치 ☐ 방문 설치</td></tr>
<tr><td>개발 언어
* 모두 체크</td><td colspan="5">☐ JAVA ☐ C# ☐ C++ ☐ C
☐ V/B ☐ Delphi ☐ PowerBuilder ☐ JSP
☐ ASP ☐ 기타 ( )</td></tr>
<tr><td>백업기능</td><td colspan="3">☐ 있음
☐ 자동 ☐ 수동 ☐ 혼합</td><td colspan="2">☐ 없음</td></tr>
<tr><td>외부제품
* 모두 체크</td><td colspan="5">☐ 암호화 솔루션 (제품명 :) (제품회사 :)
☐ 전자서명 솔루션 (제품명 :) (제품회사 :)
☐ 기타 (제품명 :) (제품회사 :)</td></tr>
<tr><td>암호화
알고리즘
* 모두 체크</td><td colspan="5">☐ DES ☐ 3DES(TDES) ☐ AES ☐ SEED ☐ ARIA
☐ MASK ☐ RC4 ☐ RSA ☐ DSA(DSS) ☐ MD5
☐ SHA1 ☐ SHA256 ☐ 기타 ( )</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한글 인증서

제 2020-00001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서

(인증유형: 유형 Ⅰ)

1. 제 품 명 : EMR 1.0
2. 기업명 또는 의료기관명 : ○○○
3. 대 표 자 : 이 엠 알
4. 유효기간 : 2026.00.00부터 2029.00.00까지(3년)

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의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성 검증 결과 (유형 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인증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영문 인증서

No. 2020-00001



Compliance certificate of the EMR standard

Product Name	:
Developer(Company, Medical Institution)	:
Representative	:
Validity Period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product meets the certification criteria of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on the basis of the conformity test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3-2 paragraph 2 of the Medical Service Ac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ignature /stamp

[별지 제7호서식]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업명 또는 의료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		
인증 정보	인증번호		
	유형		
재발급 사유			

위와 같이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인증서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업명 또는 의료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	

인증정보	인증번호	
	유형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위와 같이 인증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기능 변경(삭제) 신고서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처리기간

기능구분	변경 □ 삭제 □			
신고인 (※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	기업명 또는 의료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 번호	
주소 및 담당부서	주소			
	담당부서	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	팩스	이메일

인증 정보	시스템명 및 버전
	인증 번호
	인증 유형
기능변경(삭제) 신고내용	*※ 필수 인증기준별 기능변경 또는 삭제여부를 표시하고, 그 사유 및 적용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변경심사 희망기간	*0000년 00월 첫째주(00일~00일)*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9,「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기능변경(삭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귀중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0호서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이의신청서

관리번호		20XX - X - XXXXX * 인증기관이 작성		
신청인	기업명 또는 의료기관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담당자)	
	주 소			
접수번호 또는 인증번호				
이의신청 내용		※ 세부내용은 별지 사용 가능		

위와 같이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